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동구 제5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
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재 운영되고 있는 ‘모아타운 현장지원단’은 법적 근거 없이
‘모아주택·모아타운 추진계획 2단계(’ 23.1.20., 행정2부시장
방침 제15호)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
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승인·고시된 관리지역에서
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
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조례 내에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